

## 유럽연합 통신규제 정책의 이해와 시사점

김방룡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rkim@etri.re.kr

### The Analysis and Implications on Info-Communication Regulatory Policy in EU

Pang-Ryong Kim

ETRI

#### 요 약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컨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충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과도기적 현실을 반영한 이 규제의 틀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 I. 서 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80년대 후반기에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일부 가맹국을 제외하고는 음성통신 전 분야에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본 고에서 사용되는 자유화라는 용어는 규제가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장에 신규진입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도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 지침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EU의 규제체계는 최근까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EU 가맹국들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응하는 동시에 규제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03년 7월에 채택한 것이 「2003년 프레임워크」이다. EU는 2003년 7월 24일까지 가맹 각국이 이들 새로운 규제체계(이하 「2003년 프레임워크」)로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2003년 프레임워크」체계는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미디어 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체계는 현저한 시장지배력(SMP: Significant Market Power)을 가진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에 한정하여 사전규제를 존속시키고, 그 밖의 시장에 대해서는 사후규제로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SMP란 한 국가내의 특정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2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으로써 현저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자를 지칭한다. 단, 최종적인 판단은 당해 서비스의 시장규모, 사업자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규제당국의 판단에 유보한다[1].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9월, 정보통신부가 향후 미디어 융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 분류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2]. 이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시내 및 시외 전화를 국내전화로 통합하고,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를 음성/데이터 전송서비스로 통합하는 한편, 전기통

신회선설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관련 설비까지 포함하는 세 가지 조치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이 개선안은 「2003년 프레임워크」에 비하면 규제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미미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2003년 프레임워크」의 주요내용인 미디어 융합에 대응한 규제체계, 진입규제의 완화, 시장 획정에 기초한 사후규제로의 이행의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EU 규제체계의 개편과정

EU에서는 이미 계획된 통신시장 개방일정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일부 가맹국을 제외하고 음성통신을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부문에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3]. EU의 통신규제에 대한 기본원칙은 통신서비스와 기기시장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제안된 1987년의 Green Paper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3가지의 기본원칙은 EC조약 제9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독점분야의 자유화, EC조약 제100 a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유럽시장의 조화화, EC조약 제85조와 제86조 및 합병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경쟁규칙의 적용이다[4].

1998년 1월을 기하여 단행되었던 EU의 자유화는 유럽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선진국들에 비하여 그 진행이 매우 느린 편이었다. 2000년 12월에 발표되었던 전기통신규제의 도입상황에 관한 제6차 보고서에서는 1998년 1월, 통신시장의 완전자유화 선언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된 EU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의 대체적인 결과는 EU공동체는 과거의 문제점을 급속도로 극복하면서 규제완화에서 성공을 한 편이라고 결론지었다[5].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EU 가맹국에서는 여전히 구 국영독점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실정이다.